

2024년 「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모집 공고문

우리 수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 육성 및 조직 체계화를 통한 생산·유통·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조직 육성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품목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수산물 전반(전략품목 및 유망품목 등)

- 전략품목 : 국가 전체 수출에서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 * 전략품목 : 김, 굴, 전복, 넙치, 어묵, 고등어 등 / 전략품목 신청 시 계량평가 가점(1점) 부여
- 유망품목 : 전략품목 외 조직 육성이 필요한 수출 유망품목
 - * 유망품목 : 멸치, 소금, 바지락, 소라 등

2. 모집대상 : 수산 수출 품목조직(법인 또는 자율협의체)

- ① **단일품목 법인조직** : 최소 5개 이상 생산·가공·수출업체가 모여 설립한 단일품목 “법인” 조직체(법인 등기必)
 - * 단, 생산자 또는 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만 이루어진 법인조직은 인정하지 않음(수출업체 필수 가입)
 - ** 참여업체의 해당 법인 출자 및 등기부 기재 필수
- ② 생산·가공·수출 단계별 관련 업체가 참여한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최소 5업체 이상/법인화 의무 없음)
 - * 단, 생산자 또는 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만 이루어진 자율협의체는 인정하지 않음(수출업체 필수 가입)
 - ** 참여 회원사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3. 지원기간 : '24.1.1~10.31 (지원 기간 내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대하여 인정)

4. 지원규모 : 총 8개 조직 내외

- 조직별 수출규모에 따른 단계별(유망, 성장, 스타) 조직 지원
 - 신청조직이 해당하는 조직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작성하되,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최종 배정예산 조정가능

구 분	유망조직	성장조직	스타조직							
지원규모	총 8개 조직 내외									
지원품목	수산식품 전략·유망품목 등(선도조직 대표품목 선택)									
지원자격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u>1천만불 미만</u>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u>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u>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u>3천만불 이상</u>							
지원한도 (백만원)	100~150백만원	150~200백만원	200~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본한도 (A)	인센티브 (B)		합계 (A+B)					
	수출 비중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단년 지원	계속 지원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단년 지원	계속 지원
	유망	100	10	20	30	20	110	120	130	150
	성장	150	10	20	30	20	160	170	180	200
	스타	200	10	20	30	20	210	220	230	250

	(A) 기본한도 : 신청품목의 전년도 회원사 수출실적에 따른 기본한도 부여 (B) 인센티브 : 신청품목 전년도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선도조직 수출액 비중에 따라 기본한도에 인센티브 한도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10% 미만 : 기본한도만 신청 가능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10% 이상 20% 미만 : 10백만원 추가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20% 이상 30% 미만 : 20백만원 추가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30% 이상 : 30백만원 추가 * 계속지원 조직의 경우, 계속지원 인센티브(20백만원) 한도 추가 가능
지원기간	1년(단,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가 대표회원사로 있는 조직은 50% 지원

5.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예시
1	비관세장벽 대응	(1-1)안전성 검사	수출을 위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위생·안전성 검사, 기능성 성분 검사, 방사능 검사 등
		(1-2)안전성 및 비관세장벽 컨설팅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가별 수입규제에 따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2	생산성 향상	(2-1)생산품질관리	품질관리 매뉴얼제작(자문료, 제작비),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시스템(ERP)·생산이력추적시스템(S/W) 도입비용 등
		(2-2)품질인증	친환경, ISO, HACCP, ASC, MSC 등 해외 시설, 규격 및 품질 인증 취득 관련 비용 등
		(2-3)신품종 도입 비용	신품종 도입 관련 한시적 치패·치어 구입 등
3	고부가가치화 (의무)	(3-1)기반구축	품질 향상 R&D, 생산·유통·가공 전문가 초청 컨설팅 등
		(3-2)역량강화	신제품(품종)개발 연구용역, 레시피 개발, 신제품(밀키트, HMR 등) 개발, 신제품 관능검사 자문 등
4	수출 기반형성	(4-1)수출포장개선	수출용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개발, 소포장 개선·개발, 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구매 비용 등(금형, 동판 등 자산구입 제외) - 단, 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구매비용은 배정예산의 10% 한도 지원
		(4-2)물류효율화	수출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및 IT전산시스템 도입 비용
		(4-3)공동브랜드 개발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 상표권 출원등록 등
		(4-4)홍보물제작	해외광고, 카탈로그 제작,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 등
		(4-5)수출대금 공동정산 시스템 도입 비용	선도조직 내 자체 수출대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4-6)IP개발 및 도입	IP(Intellectual Property) 도입 자문, IP 개발비, IP 라이선스 비용 등
5	시장개척 지원	(5-1)해외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 온라인 판촉, 해외 마케팅 테스트, 시연·시식행사 등
		(5-2)바이어발굴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샘플 배송 비용, 해외시장정보조사, 수출애로해소 자문 등
6	조직운영 관리	(6-1)조직결성	신규회원사 발굴, 법인 등록비용, 법인화 자문 등
		(6-2)관리운영비	전문가 초청 공동 세미나 개최, 회원사 간담회, 워크숍 등 - 조직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 워크숍 연 1회 의무 추진
		(6-3)전문인력교육	생산, 품질관리, 가공기술, 수출, 무역 등 외부 교육이수
		(6-4)사무국운영	계속지원 조직 대상 사무국 전담 인력에 한함

7	자율제안사업	(7-1)자율제안사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및 aT 승인 필수, 2천만원 한도)
8	무역애로해소	(8-1)무역애로해소	해상·항공수출 운임비, 해외시장조사 출장비(배정예산의 10% 이내) - 해외시장조사 출장비는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 50% 적용(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단, 원물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가공상품 개발 확대를 위해 지원항목 중 **고부가가치화(신제품 개발, R&D 등) 항목에 배정예산의 10% 이상 의무 추진**(의무추진 항목 착수 및 결과는 최종 평가 시 계속조직 지원 자격 여부에 반영 예정)

** 특정 1개 지원항목에 전체 배정예산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별 예산 한도는 중간점검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조정 추진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자부담)

6.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계량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구 분	세부내용
선정기준	○ 계량평가(30%) : 수출실적, 수출비중, 수출단가 ○ 비계량평가(70%) : 생산품질관리, 해외시장개척, 조직화발전성, 사업계획 등 - 비계량평가는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PPT 공개 발표를 통한 평가(추후 개별 안내) - 신청조직이 16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평가 결과 16위까지 비계량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기 제출업체는 생략가능), 가점관련 증빙서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회원사별 사업자등록증, 법인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가감점사항> ○ 가감점 : 선도조직 내 개별기업 가감점사항 보유 시 조직 가감점으로 인정 ※ 가점사항(최대 5점)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체 (1점) ▷ K-Fish 브랜드 승인 업체(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1점)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최근 3년간, '21~'23) (1점)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1~'23) (1점)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1점)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1점)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1점) ▷ 해양수산물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등과 부합하는 자(해양수산물 신지식인) (1점) ▷ 전년도 선도조직 평가 우수업체, 전년도 선도조직 사업 BP(BEST PRACTICE) 우수(1~3위) 업체 (각 1점) ▷ 전년도 수산물 수출 비중 1% 이상의 전략품목 신청조직(1점) ※ 감점사항(최대 5점) ▷ 최근 3개년 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선정 후 미정산 업체(5점) ▷ 전년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최종평가 결과 부진업체(5점)

7. 사업신청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상에서 용량관계로 업로드가 안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별도 제출 가능
 - 별도제출 : minyeong@at.or.kr (별도 제출 시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 aT 수산사업단 권민영 과장(☎ 061-931-0853)

☐ 신청기간 : '24. 1. 29(월) ~ '24. 2. 16(금) 18:00까지

8. 향후일정

- ☐ 계량 및 비계량평가 : '24.2월말 (계량평가 결과 및 비계량평가 발표 일정은 개별 안내)
-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별도통보) : '24. 3월초

2024. 1.



2024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점수					비고
			수	우	미	양	가	
수출규모 (20)	수출실적	10	20백만불 이상	15백만불 이상	10백만불 이상	5백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	계량 (30)
			10	8	6	4	2	
			▷ 신청품목의 전년도 선도조직 회원사 수출실적 합산					
	수출비중	10	30% 이상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미만	
			10	8	6	4	2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선도조직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점유율)								
고부가가치화 (10)	수출단가	10	+5%p 이상	+4%p 이상 +5%p 미만	+3%p 이상 +4%p 미만	+2%p 이상 +3%p 미만	+2%p 미만	
			10	8	6	4	2	
			▷ 신청품목의 전년도 수출단가 대비 선도조직의 수출단가 비율 * 수출단가 = 전년도 수출금액 / 전년도 수출물량					
성과달성 기대 (20)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수립 적정성	20	▷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 방향, 품목별 수출활성화 계획 등 - 품목별 특성 반영한 신규 추진내용 포함여부 등 ex) 조직권역 확대 등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생산/ 품질관리 (10)	생산/ 공급기반 구축	5	▷ 친환경 생산환경 구축, 신제품 육성,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노력 등 ▷ 생산어가관리 및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생산이력관리, ERP구축 등 ▷ 공동선별장, 생산가공시설 및 물류인프라(저온저장고, 수송차량, 가공설비, 콜드체인 등) 구축 수준					
	품질/ 안전성관리	5	▷ 공동 품질·품위관리(공동선별) 매뉴얼 구축, 생산이력추적관리, 품위관리전담인력 운영 등 품질관리 시스템 수준 ▷ 생산, 제조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시스템 수준					
해외 시장 개척 (20)	해외마케팅 계획	20	▷ 해외시장개척 계획의 적정성 -시장 포트폴리오 및 시장별 마케팅전략 등을 통한 연말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심층 평가 ▷ 품목별 공동마케팅 -품목공동마케팅 계획, 목표국에 맞는 전략적 접근 등					
조직화 발전성 (20)	수출고도화	20	▷ 수출조직 법인화 계획 및 추진 의지 ▷ 수출품목의 생산어가와와의 연계성 및 수출기여도 ▷ 조직화 : 어가 수, 계약면적, 생산대비 수출량, 조직화·규모화 계획 등 ▷ 조직운영 관리체계 - 공동의결체계 구축, 수출 모든 단계별 회원사 모집 등					
가점	(최대 +5)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체 (1점) ▷ K-Fish 브랜드 승인 업체(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1점)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최근 3년간, '21~'23) (1점)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1~'23) (1점)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1점)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1점)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1점) ▷ 해양수산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등과 부합하는 자(해양수산 신지식인) (1점) ▷ 전년도 선도조직 평가 우수업체, 전년도 선도조직 사업 BP(BEST PRACTICE) 우수(1~3위) 업체 (각 1점) ▷ 전년도 수산물 수출 비중 1% 이상의 전략품목 신청조직(1점)						
		감점	(최대 -5)	▷ 최근 3개년 간 수산물 선도조직육성사업 선정 후 미정산 업체(5점) ▷ 전년도 수산 선도조직 최종평가 결과 부진업체(5점)				

※ 제출된 증빙자료가 고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